

2018학년도 1학기 학부과정 휴학 등록금 반환 안내

1. 시행시기 : 2017학년도 2학기부터 (학부과정 등록휴학제 폐지)

2. 등록금 반환기준

반환사유발생일	반환금액	납부(공제)금액
해당 학기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2018. 3. 7(수)까지	수업료 전액	-
학기 개시일에서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2018. 3. 8(목) ~ 3. 31(토)	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	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18. 4. 1(일) ~ 4. 30(월)	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	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18. 5. 1(화) ~ 5. 30(수)	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	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18. 5. 31(목)부터	반환하지 않음	수업료 전액

-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입영 또는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전액을 반환하되, 입영휴학한 자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.
- 미등록 상태에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수강변경마감일부터 ‘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’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해야 함.
- 수업료 반환은 휴학 신청일로부터 평일기준 10일 정도 소요되며, 납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가 완료되어야 휴학신청이 완료됨.

3. 경과조치

학부과정 학생이 2017학년도 1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인 경우

- 복학해야 하는 학기의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을 연장하는 경우 등록금이 이월처리
- 그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의 휴학일을 기준으로 반환함.

4. 반환금 산정

- 장학금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의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에서 수혜

받은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함. (이때 수업료는 실납부금액이 아니라 해당 학기 책정된 수업료 기준임.)

【 수업료 환불금이 있는 경우 】

책정된 수업료 3,000,000원, 장학금 2,000,000원, 실납부금액 1,010,000원(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), 반환사유발생일 2017. 9. 30

⇒ 반환금액 책정 : 3,000,000원(책정된 수업료) * 5/6(반환사유발생일에 따른 반환율) - 2,000,000원(수혜한 장학금 전액) = 500,000원(실제 환불금액)

【 장학금 환수금이 있는 경우 】

책정된 수업료 3,000,000원, 장학금 2,000,000원, 실납부금액 1,010,000원(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), 반환사유발생일 2017. 11. 3

⇒ 반환금액 책정 : 3,000,000원(책정된 수업료) * 1/2(반환사유발생일에 따른 반환율) - 2,000,000원(수혜한 장학금 전액) = -500,000원(환불금액은 없으며, 장학금 환수금이 발생함.)

⇒ 장학금 환수금이 있는 경우, 납부가 완료되어야 휴학 등 학적변동이 가능함.

2018. 2. .

총 무 처 장